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법)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법)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법) CCTV 설치

2. 설치목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방법)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4. 설치장소 예정지

연번	상세위치 (설치 예정지)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2-25번지 메그놀리아오피스텔 주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8-3번지 진성프라자 주변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9-22번지 석남역 5번출구 주변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36번지 검단눈담봄101 주변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7-10번지 모다아울렛삼거리 주변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33번지 드림타워 맞은편 주변	

5. 행정예고기간 : 2024. 10. 31.(목) ~ 2024. 11. 21.(목)(21일간)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www.seo.incheon.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 출 처

- 주소 : (우3151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별관 1층)

- 팩스 : 032-560-2792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1)

마. 제출기한 : 2024. 11. 21.(목)

바.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032-560-594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